

수 신 : 정회원사

참 조 :

제 목 :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, 더민주, 국토교통위원회, 의안번호 2221008, ' 26. 9. 2)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6. 9.14(월)까지 사무처 (FAX 032-428-7334, 이메일 qrt9373@kosca.or.kr)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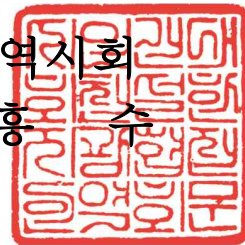
☐ 주요내용

- 시공자격 심의위원회 설립(안 제16조의2)
-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공사 보호구간, 의제부대공사 범위를 3년마다 설정(안 제16조제1항제4호, 제16조제2항)

붙 임 1.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
2. 의견 제출양식 1부. 끝.

※ 붙임 문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(incheon.kosca.or.kr) - 공지사항 참조바랍니다.

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
회 장 조 홍 수



담당자 팀원 최현탁 선임 임윤희 파트장 유태원 파트장 노명숙 팀장 조태원
시행 전건협 인천 제726호(2026. 9. 7)

우 21574/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38 4층(구월동, 전문건설회관) / <http://incheon.kosca.or.kr>
전화 032-428-7331 / 전송 032-428-7334 / 전자우편 qrt9373@kosca.or.kr